

政府 施策

中企기반조성자금 6,520억 支援 – 신용대출 · 保證지원 적극活用 유도 –

그동안 韓國銀行의 再割지원에 의해 기업들에게 지원되던 ▲ 수출산업설비자금 ▲ 기술개발자금 ▲ 공해방지시설자금 및 ▲ 중소기업제품 需要者金融등이 財政자금 지원인 中小企業 基盤造成資金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이를 자금의 융자비율이 소요자금전액까지로 확대되나 금년 지원총액이 6520억원으로 제한된다.

또 수출산업설비자금 지원시 부여되던 對應輸出 의무가 폐지된다.

財務部와 商工部는 정책금융 축소계획에 따라 수출산업설비자금등 4개 중소기업지원자금이 3월15일부터 韓銀재할지원에서 財政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 운용규정 △ 운용세칙을 새로 제정하는 한편 △ 94년 자금운용계획을 공고(재무부 공고 제 1994-22호, 상공자원부 공고 제 1994-22호, '94. 3. 8)했다.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반조성자금 운용규정 및 94년 자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기반조성자금 지원규모는 정부예산 3260억원(50%)과 은행자체자금 3260억원을 포함, 총 652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설비투자, 기술개발, 환경보전 및 제품구매등 4개 분야며 취급은행은 중소기업은행 · 국민은행 · 시중은행 · 지방은행 등이다.

정부는 이중 중소기업은행을 轉貸銀行으로 지정해 지원재원을 예탁하고 시중은행등이 중소기업에게 기반조성자금을 대출할 경우 대출액의 50%를 연 5%로 企銀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반조성자금 이용금리는 연 8.5%로 정책금융금리가 적용되고 융자기간 및 비율은 각각 1~10년(1/3범위내 거치기간 포함), 소요자금의 100%까지다.

이같은 융자조건은 현행 수출산업설비 자금에 해당되는 설비투자분야 기반조성자금도 똑같이 적용돼 上場중소기업의 융자비율이 현재 80%에서 100%로 확대됐으며 대응수출 의무도 폐지됐다.

정부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同자금을 대출할 때 은행이 기업의 사업전망 또는 신용도를 고려해 신용대출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및 수급기업에 대한 大企業의 보증등을 적극 이용토록 유도키로 했다.

KS규격 97년까지 國際化

- 工振廳, 5천종 ISO · IEC등 국제규격과 일치 -

선진국의 기술장벽화에 대응, KS규격의 국제화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공진청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KS규격중 5천종의 규격을 97년까지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표준회의) 등의 국제규격과 일치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의해 KS규격이 국제규격과 일치될 경우 국제무역의 원활성이 확보되고 취약기술수준의 향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규격중 약 20%가 국제규격과 일치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5천종의 규격이 선진화될 경우 국내규격의 대부분이 국제규격과 일치하게 된다.

KS규격의 국제규격과의 일치화하는 세계경제의 지역불록화에 따른 지역표준탄생, 기술의 UN이라 할 수 있는 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표준화 활동강화등으로 생산활동 및 산업기술의 표준성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규격을 국제표준에 반영시켜 무역상의 기술장벽에 사전대처하고 국가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표준화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을 표준화하여 국제무대에서 주도권 장악을 시도하고 있어 이에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와관련 미국은 상무성산하 국립표준원을 국립표준기술 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대부분의 ISO 기술위원회에 가입하고 있으며 일본도 JIS(일본산업규격) 고수정책에서 최근 국제 표준화주의로 전환하여 JIS의 위상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공진청은 ISO9000 심사제도를 참조하여 현재의 KS규격 심사제도를 합리성과 객관적인 증거주의 위주의 심사제도로 개선키로 했다.

이를위해 사내표준화등을 점검하기 위한 공장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장에 대한 사전정보 수집 및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심사개시회의를 공장심사의 필수과정으로 포함시키며 공장심사의 조건부 허가제도를 도입, 부적합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와 회사관계자의 확인서명을 첨부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KS 심사원의 국제화를 위해 자격요건도 강화, 현행 요건에 심사기법등의 교육이수와 심사 보조원으로 10회 이상의 심사수행과정(심사원시보) 이수를 추가하며 심사원에 대한 비교평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주기적인 심사원 평가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中企 품질경영 진단지도 실시 – 工振廳, 1천개 업체대상 … ISO 인증획득 지원 –

공진청은 중소기업의 품질경영체계 확립 및 ISO 9000 인증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1천개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경영 실태평가 및 진단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진청은 중소기업의 품질경영체계가 취약하여 선진국시장에서 밀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올해 400명의 진단요원을 투입, 전자부품 공급업체 및 금형, 열처리등 주요 기반기술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진단지도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진단기간도 30일까지 연장하며 인증획득에 필요한 절차의 지시서 작성요령 및 각종 정보자료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진단지도가 끝난후에도 인증획득 절차안내등 후속지원 도 병행할 계획이다.

그간의 진단지도등을 통해 중소업체들은 ISO 9000 인증획득을 위해 전문컨설팅 기관에 지불했던 부대비용이 절감되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기존 품질경영 전문기관 이외에 외국 인증기관에서 ISO 9000 인증을 획득한 대기업도 진단지도기관으로 지정, 이들 모기업이 해당 수급기업에 대한 진단지도를 실시할 경우 품질불량률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역 技術障壁 적극대처 – 工振廳, 年內세부계획조사 수출업계 보급키로 –

최근 선진국들이 환경보호등을 구실로 기술장벽을 크게 강화함에 따라 정부는 이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공진청에 따르면 미국·독일등 선진국들이 GATT/TBT 협정중 자국의 환경보호 및 자국 국민의 안전위해 방지등을 위한 기술규정은 기술장벽에서 제외토록한 예외조항을 이용, 일부품목에 대해 사용금지 및 수입을 규제하고 있어 수출시 국내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는 것이다.

공진청이 최근 가트 사무국으로부터 입수한 기술장벽중 우리제품의 수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장벽의 실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섬유제품에 대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염료 및 방부제로 사용되고 있는 PCP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금속부자재의 니켈함유량도 규제하고 있다.

또한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 각국들은 실내용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방염성 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방염성 처리제인 Poly bromo Biphenyl이 연소시 다른 화학물질로 변화하여 암 및 공해물질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5월 1일부터 이에대한 사용을 금지시킬 계획이다.

미국등은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CFC함유제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검토중에 있고 일본·캐나다등에서는 개인용 휴대무선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방사량을 규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각종 기술장벽이 예상됨에 따라 공진청은 선진국의 무역기술장벽중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산품에 대해 가트사무국을 통해 해당국의 기술규정 내용과 설정사유등의 파악에 나섰으며 해당 국가에 관련 기술규정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세계 각국에서 공산품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각종 기술장벽을 국별·상품별로 종합, 연내에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수출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수출비중이 높은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주요 수출국의 품질규제 내용을 감안하여 수출품 자율검사기준을 제정, 업계에 보급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체위해 가능성이 큰 신규개발제품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기술규정이 제정 운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품목으로 지정하고 안전검사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현재 미국에서 규제예정인 ABS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는 미연방 자동차 안전규격을 입수하고 품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 사전검사 품목으로의 신규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선진 각국의 부당한 기술장벽 및 기술규정에 대해서는 가트협정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여 나갈 방침이다.

– 무역기술장벽 예외조항을 근거로한 규제내역 –

국 가	근 거 법 규	규 제 품 목	규 제 내 용
미 국	통신법	저출력통신기증 10개 품목	FCC 미승인제품 판매금지
	미국정부조달규정	전 전기제품	ETL 또는 UL 승인
	미국교통 운수법	자동차용 타이어등 45개 품목	FMVSS의 규정에 의거 DOT번호
	소비자제품 안전법	후진조정 벨초기등 15개 품목	기준미달시 판매금지
	연방위해물질 규제법	장난감등 19개 품목	‘
	미국 건축법	카펫등 3개 품목	‘
일 본	소비생활용품 안전법	가정용압력밥솥등 8개 품목	S마크 미부착시 판매금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가정용품 규제법	섬유제품등 9개 품목	기준미달시 판매금지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용 안전유리등 50개 품목	형식승인
	전기용품 취체법	고무절연전선등 460개 품목	‘
	계량법	전력량계등 19개 품목	제조업자등록 검정, 정기검사
영 국	소비자 보호법	유아복등 31개 품목	기준 미달제품 판매금지
	영국전기통신법	전 전기제품	BEAB, ASTA, ATC 등 인증마크 미획득시 판매금지
프랑스	소비자보호법	페인트등 30개 품목	기준미달제품 판매금지
	전기법	세탁기등 10개 품목	LCIE 미승인제품 판매금지
독 일	기계기구안전법	안전헬멧등 384개 품목	기준미달제품 판매금지
스웨덴	시장법	스키플등 30개 품목	기준미달제품 판매금지
	전기법	가정용기기공구등 8개 품목	SEMCO미승인제품 판매금지
오 스 트 레일리아	무역시행법	어린이용 침대등 25개 품목	수입품중 기준미달제품 판매금지
스위스	전기법	전류차단기등 14개 품목	SEV미승인시 판매금지

關稅감면 研究開發用품 대폭 조정 - 재무부, 50品目 제외 48品目 추가 -

관세가 감면되는 研究開發用 물품이 대폭 조정된다.

財務部는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등 높아지는 기술장벽에 대처하고 제조업계의 기술개발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폭을 대폭 조정해 시행키로 했다.

현재 연구개발용 물품의 관세감면대상은 243개인데 이중 모델밀링반·웨이퍼자동운반기·오븐·신호발생기 등 국산화가 이뤄진 50개 품목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발효기·가스터빈·아닐챔버등 48개 품목이 새로 수혜대상에 포함돼 관세감면 대상물품은 241개로 지금보다 2개가 줄어들게 된다.

이와 별도로 자동증류기·막성장 장치·유전자합성기등 현재 수혜대상중 75개 품목의 규격이 변경된다.

財務部는 “이번 대상물품조정은 국산가능물품, 용도·규격이 불분명한 물품 및 소모성 물품 등을 제외하는 한편 △부가가치산업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산업 △반도체·자동차·항공기 등 전략적 육성산업과 관련된 물품을 우선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새로 지정한 물품 가운데는 공작기계·측정기구등 주로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물품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기업부설연구소(1837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65개) 등을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감면폭은 80%로 기본관세율이 8%인 물품이 수입될 경우에 실제부담관세율은 1.6%로 낮아지게 된다.

한편 財務部는 첨단 및 방위산업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범위를 오는 4월께 확대하고 환경오염방지 및 공장자동화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범위도 올 상반기 중 수요조사를 거쳐 7월께 조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들 용도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감면 혜택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공부 또는 재무부에 지정을 요청하면 된다.